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 | |
|--------|-------|
| 선 람 | 기관위원장 |
| | |

제1122호 2015. 10. 13.(화)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383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389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389호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2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1383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서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2016년 1월 개관예정인 청라복합문화센터의 조례 제정에 따른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 규정 필요

2. 주요내용

-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목적, 용어의 정의, 정원 등(제1조~제4조)
- 센터의 위탁운영 등(제5조~제12조)
- 운영위원회 (제13조 ~제21조)
- 시설의 대관 (제22조 ~제24조)
-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제25조 ~제3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032-560-4345, 팩스 032-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제정한다.

2. 제정이유

- 서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2016년 1월 개관예정인 청라복합문화센터의 조례 제정에 따른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목적, 용어의 정의, 정원 등 (제1조~제4조)
- 센터의 위탁운영 등(제5조~제12조)
- 운영위원회 (제13조 ~제21조)
- 시설의 대관 (제22조 ~제24조)
-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제25조 ~제35조)

4. 참고사항

- 가. 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운영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정원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센터를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센터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1. 센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센터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 보하고, 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사업계획서 작성 등) ① 센터장은 매년 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120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센터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2. 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
3.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4. 프로그램의 운영 및 공연에 관한 사항
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장 센터의 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사업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재위탁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에는 재위·수탁 당사자 간에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위탁의 경우에도 센터의 모든 시설물의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⑤ 센터의 위탁기간은 쌍방간의 별도의 해약표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탁운영 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시작 120일 전까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구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 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수탁자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센터의 관리·운영 방법,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사용료 등을 포함한 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지도·감독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서, 예산안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현황 등 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구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을 주거나 센터의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전대하거나 센터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위·수탁계약 시 구청장이 정하는 한도금액으로 구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 재정보증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법인에게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센터의 위탁 관리·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 배상,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

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져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의 사망 또는 수탁법인(단체)이 해산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수탁자의 재정상태 악화, 그 밖의 사유로 센터에 대한 위탁 관리·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예정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청라복합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다만, 위탁 시에는 수탁자의 이사회가 위원회를 대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문화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2명
2. 교육계 또는 언론계 인사
3. 문화예술계 또는 체육계 인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된다.

② 안건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구의원인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 할 때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수탁자 선정 등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

제2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대관

제22조(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센터장(이하 위탁 시에는 수탁자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이 사용허가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연시설 부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승인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절차는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수납으로 같음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사용료 수입금은 징수당일에 관리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금융기관 마감시간 후의 징수액은 다음 날까지 입금조치하여야 하되, 다음 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부대시설의 사용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24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7조, 제18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또는 사용승인 취소 3일 전까지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장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제25조(강사의 위촉)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임기는 전임 강사의 경우에 한한다. 전임강사의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긴급히 위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필요시 강좌의 원활한 진행 및 강사의 수급을 고려하여 미리 2명 이상의 강사를 선발할 수 있다.

제26조(강사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수강생 모집 시 정원대비 접수율이 60퍼센트 미만으로서 강좌를 지속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의 강사
2. 결강, 지각, 강좌진행의 불성실 등으로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
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구청장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제27조(강사의 책무) 담당강사는 성실한 강좌운영 및 회원의 적정한 관리와 추가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강좌에 대한 교안, 일일 수업계획 및 진행결과를 일지로 작성 보고
2. 강좌 시·종 시각의 정확한 이행
3. 회원 출결상황관리, 불참회원 연락유지 및 기록
4. 미등록 회원에 대한 교습 및 개인교습 금지
5. 회원 불만사항 접수보고 및 대책 강구
6. 교습시 거친 언행 금지
7. 회원과의 분쟁 발생 시 즉시 상황 보고
8. 결강, 지각 금지 및 부득이한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들에게 고지 후 보충강의 실시
9. 충분한 수업준비 및 강좌 전후 교구 및 교실 정리정돈
10. 업무 담당자의 정당한 요구에 순응

11. 회원 확보를 위한 홍보
12. 안전사고 방지
13. 그 밖의 센터장이 정하는 사항

제28조(수영지도 강사) 수영지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강습진행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수지도를 원칙으로 진행
2. 안전지도 근무자는 정위치에서 바른 자세로 근무
3. 수영장내 청결유지 및 수영용구의 보관, 관리 철저
4. 수온, 실내온도, 수질확인 및 보고
5. 수업, 안전지도 담당시간 이외에는 사무실에 정위치하여 회원관리, 교습방법 연찬 및 고정사항 청취

제29조(생활체육 강사) 생활체육 지도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회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하여야 한다.

1. 운동 장비의 보관, 관리
2. 회원의 운동자세 교정
3. 회원의 체력에 맞는 운동부하량 부여
4. 회원의 운동상태에 대한 지속적 관찰
5. 그 밖의 센터장이 정하는 사항

제30조(셔틀버스 운행) ① 센터운영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득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셔틀버스 운행자는 차량의 점검·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배차시각 준수 및 난폭운전 금지
2. 정차시간 정차 반드시 준수 및 지정시간 이전 통과금지
3. 차량 내·외부 청결 유지
4. 단정한 복장 착용
5. 차량운행일지의 성실한 작성 및 보고
6. 회원과의 분쟁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일지 기재
7. 회원여부 확인 및 선별적 승차여부 금지
8. 승·하차 지정장소 준수 운행
9. 그 밖의 센터장이 정하는 사항

제31조(탈의실 근무자의 책무) 탈의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열쇠 보관함 주변, 탈의실 내부, 샤워장에 대한 청결 유지
2. 사물함 관리, 탈의실 앞 로비 청소
3. 교대 근무시간 준수 및 공백 금지
4. 회원과의 언쟁 금지 및 언쟁 시 즉시 상황 보고
5. 회원 불편사항, 작업상황의 일지작성 보고
6. 그 밖의 센터장이 정하는 사항

제32조(기전실 운영) ① 기전실 근무자는 회관의 상시 이용이 가능토록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예방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보일러의 세관, 정비, 청소, 안전점검 이행
2. 냉·온수기의 세관, 정비, 청소, 안전점검 이행
3. 도시가스 정압기실 및 사용시설 계통별 안전점검, 청소
4. 정화조 청소 및 유지 관리
5. 물탱크 청소 및 유지 관리
6. 전기시설 및 비상발전시설에 대한 예방차원의 안전점검 확행 및 저항
측정, 선로 및 시설의 누전 점검
7. 승강기 정기검사, 자체 안전검사 및 일일점검

② 기전실 근무자의 일일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점검내용을 일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조실 확인 점검
2. 보일러 드레인 실시
3. 배수펌프 상태
4. 옥상 고가수조
5. 공동구 라인 점검
6. 수·배전시설 및 각종 전기시설
7. 그 밖에 기계, 전기, 건축물 관련 필요한 사항

제33조(수영장 수처리실 운영) 수영장 수처리실 근무자는 수영장의 상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유지관리 및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 각 의 사항에 유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수영장 수질관리 및 청결 유지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수영조육수의 수질 기준 유지

제34조(자체운영규정)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은 위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등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대시설 사용료(제22조 관련)

| 시설명 / 구분 | | 단위 | 기본사용료 | 비고 |
|------------|--------------|-------------|---|--|
| 피아노 | 연주용 | 1회 | 60,000 |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 | 연습용 | 1회 | 20,000 | |
| 무대 | 오케스트라피트 | 1회 | 50,000 |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한다. - 연주용 피아노의 조율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 | 슬라이딩 무대 | 1회 | 30,000 | |
| | 승강 무대 | 1회 | 50,000 | |
| | 합창단석 | 1일 | 100,000 | |
| | 무대사막 | 1일 | 100,000 | |
| | 댄싱플로어(무용매트) | 1일 | 100,000 | |
| | 덧마루 | 1일 기본(66㎡) | 50,000 | |
| | | 추가(16.5㎡) | 10,000 | |
| 음향 반사판 | 1일 | 50,000 | - 덧마루(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 | |
| 음향시설 | 유선마이크(기본 3대) | 1회 | 10,000 | - 설치, 전환, 해체 사용자 부담 |
| | 무선 마이크 | 1회 1채널 | 15,000 | - 댄싱플로어 작업시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
| | 음향콘솔 | 1회 | 50,000 |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 | 무선 인터컴 | 1일 1채널 | 10,000 |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 | 빔 프로젝트 | 1회 | 150,000 | - 대중공연시 발전차 의무 사용 |
| | 녹음 | MD, CD, 카세트 | 개 | 30,000 |
| 비디오 녹화 | | 개 | 40,000 | - 녹음테이프 및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 조명시설 | 기본조명 | 1회 | 50,000 |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 |
| | 조명콘솔 | 1일 | 50,000 | - 조작인원 사용자 부담 |
| | FOLLOW PIN | 1회 | 30,000 |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 | 무빙 라이트 | 1대 | 30,000 | |
| | PAR 라이트 | 1대 | 2,000 | |
| | 웨이브 머신 | 1대 | 10,000 | |
| | 포그 머신 | 1대 | 10,000 | |
| | 블랙 라이트 | 1대 | 10,000 | |
| | 드라이 아이스 머신 | 1대 | 20,000 | |
| | | | | |
| 의상 및 대·소도구 | | 1회 | 취득가액의 5퍼센트 | - 단위 당 취득가액이 100,000원 이상인 것에 한함 |
| 냉·난방 | 공연장 전시설 | 1시간 | 시설 별 시간 당 연료(전기포함) 시가에 1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범위 내 |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 | 다목적홀 | | | - 냉방 : 6월 ~ 8월 - 난방 : 11월 ~ 3월 |

[별지 제1호서식]

| 청라복합문화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 | | | 처리기간 | |
|---|------------------------------------|-------------------------|--|------|-----|
| | | | | 30일 | |
| 신청인 | | (☎ :) | | | |
| 소재지 | | | |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
| | 주소 | | | | |
| 위탁기간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간) | | | |
| <p>「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청라복합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주소 :</p> | | | | | |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 | |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 | | | 수수료 |
| |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 | | | 없음 |
|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 | | |

[별지 제2호서식]

| 청라복합문화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 | | |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 (☎ :) | | |
| 소재지 | | |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 | 주소 | | | |
| 당초 위탁기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 | 일까지() | 년간) |
| 연장 위탁기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 | 일까지() | 년간) |
| <p>「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 따라 청라복합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단체명(법인명) :</p> <p style="padding-left: 100px;">성명(대표자명) :</p> <p style="padding-left: 100px;">주소 :</p> | | | | |
| <p>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p> | | |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 | | 수수료 |
| |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 | | 없음 |
| |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 |

[별지 제3호서식]

[뒷면]

서 약 서

청라복합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본인(단체)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 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시설사용 허가조건을 준수한다.
- 나. 사용시설 및 부대시설을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한다.
- 다. 사용기간 동안 행사요원 및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서약자가 진다.
- 라. 사용자와 실제 운영자가 상위 되는 일 또는 타인(단체)에게 관리양도, 전대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 마. 국가적 행사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사항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장 대표 귀하

[별지 제5호서식]

| 청라복합문화센터 시설사용 허가서 | | | | |
|--|----------|-----------------|---------|---|
| 신 | 주 소 | | | |
| 청 인 | 직업(단체명) | | 전 화 번 호 | |
| | 성명(대표자명) | | 생 년 월 일 | |
| 시설 이용 | 기 본 시 설 | | | |
| | 부 대 시 설 | | | |
| 사 용 기 간 | | 년 | 월 | 일 |
| | | 년 | 월 | 일 |
| | | 시부터 시까지(일간) | | |
| 사 용 목 적 | | | | |
| 사용료 | 유 상 | | | |
| | 무 상 | | | |
| 첨 부 | | 허가조건 1부. | | |
| <p>년 월 일자로 위 신청인이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붙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용허가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 | | | |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장 인 | | | | |

(※ 허가조건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함)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청라복합문화센터 공연시설 부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승인 신청서

1. 반 입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반 입 목 적 :
3. 부대설비 설치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예비가동점검일시 : 년 월 일 시
5. 반·출입 장비목록

| 연번 | 명 칭 | 용량 (규격) | 수 량 | 용 도 | 사용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부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장 귀하

| | |
|-----|------------------------|
| 첨 부 | 부대설비 설치예정 도면(전기결선도 포함) |
|-----|------------------------|

[별지 제7호서식]

| 청라복합문화센터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 | | | |
|---|--------------------------------|-------------------------|--------|--|
| 신청인 | 주소 | (☎) | | |
| | 성명 | 생년월일 | | |
| | 단체명 (대표자) | 관계 | | |
| 당초신청내용 | 사용허가시설 (프로그램명) | 시설명 : (프로그램명) : | | |
| | 사용(이용)기간 | 년 월 일(시 분) ~ 년 월 일(시 분) | | |
| 납부한 사용료 | | 금 | 원정(₩) | |
| 입금계좌 |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 취소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p>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청라복합문화센터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주소 :</p> | | | | |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장 귀하 | | | | |
| 첨부 | 1. 은행통장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통. | | |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1389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협의체 구성을 삭제하고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우수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 대한 표창 및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을 촉진하고, 학교 교육을 지원하여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생활화되도록 하며 교육 및 홍보 대상을 구민대표, 여성 등 특정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관내 주민으로 확대함으로써 기후변화의 대응 및 적응기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무적인 협의체 구성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을 관련 민간단체 외에 사업장, 주민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계층이 녹색생활 운동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민간 참여를 촉진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나. 기후변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녹색생활 운동 추진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여자에 대한 표창 및 인센티브(포상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한 동기를 부여하고 주민들의 친환경 생활습관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함(안 제10조제3항)

- 다.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학교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습관화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 라. 교육 및 홍보 대상을 구민대표, 여성 등 특정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관내 주민으로 확대하여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 인식능력을 제고함(안 제11조제3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02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참조 : 환경보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1) 주소 : (우)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 환경보전과
- 2) 전화 : 032-560-4631
- 3) 팩스 : 032-560-2752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4조제1항”을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을 “녹색생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단체”를 “민간단체, 사업장, 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기업, 단체, 공동주택, 마을, 학교, 기관 등에 표창·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촉진 등에 기여
2.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한 관련 사업 참여 및 감축실적 우수
3. 자원 절약, 재활용, 폐기물 감량 등 녹색생활 확산에 기여
4. 그 밖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사업 참여 및 추진실적 우수

제11조제2항 중 “일반교양교육”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일반교양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 구민대표, 여성 등에 대하여”를 “공무원 및 관내 주민 등에게”로 한다.

제12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공고 제2015 - 1390호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현행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상위 법령 제명 개정에 따라 조례명 및 관련 용어 등 변경·정비
- 나. 상위 법령의 용어에 대해 조례에서 해석 규정을 두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 소지가 있고 법령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으며 조례로 정할 경우 자치단체별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상위법에 따라 수정하여 조례 운영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녹색제품 구매제도를 원활히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명 변경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내용 중 관련 용어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전체 변경함.

나. 조례 제2조의 공공기관의 범위를 상위법을 따르도록 수정하고, 법령 의미의 축소 또는 확대 가능성에 따라 위배소지가 있는 제7조를 삭제하고, 상위법을 반영하여 제6조의 구매실적 공표 조항을 삭제하고 제9조의 구매직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02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환경보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1) 주소 :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보전과
- 2) 전화 : 032-560-4631
- 3) 팩스 : 032-560-2752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 및 법 시행령 제2조를 따른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을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을 “법 제3조제1항”으로,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

며, 같은 항 제5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을“(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이를 구”를 “이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 제9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정보제공)”을 “(녹색제품 정보제공)”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 확산)”을 “(녹색제품 구매 확산)”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3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